

청문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정치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법 개정안

부서 정치경제위원회

작성년월일 2013.2.14

발표자 이환인

PPT 최경호

발의자윤병석

공동 청원인

전재운 전장환 안성준 최경호

강준구 이루다 박세민 김민정

이원빈 우재연 김형원 박진아

문지혜

목차

1.
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

2.
현 청문회의
문제점

3.
개정안

- 3-1. 제 3조
- 3-2. 제 6조
- 3-3. 제 9조
- 3-4. 제 10조

Chapter 1

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공직에 행정
 명퇴된 선관위 영탁 채용을 점령할 해
 핵 뇌 좌는 김태종 절협할 업무능력 함
 이노인간대응 경쟁력 연차하진 양
 는지를 검증해다.

현 청문회의 문제점

현 청문회의 문제점

전체의 60%

불과 20%

자료출처
경향신문

고위공직자
단위:%

검증을
강화해
53.4%

대상 가구·유대
95% 신뢰수준

<표4>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뤄진 주요쟁점 100개

구분		빈도
도덕성 (49)	가족 관련	●●●●●●●●●●●●●●●●●● (15)
	부동산 관련	●●●●●●●●●●●●●●●● (13)
	뇌물 수수·특혜 등	●●●●● (4)
	주식 관련	●●●● (3)
	병역	●●●●●● (5)
	법규 위반	●●●●● (4)
	탈세	●●●●● (4)
	대출	●● (2)
	논문표절	● (1)
자질 및 행적 (11)	발언 관련	●●●● (3)
	품행 관련	●●●●●●●● (6)
	철학	●● (2)
전문성 (23)	정책 대응	●● (2)
	정책 일관성	●●●● (3)
	정책실패	●●●●● (4)
	업무처리 미흡	●●●●●●●● (6)
	업무경험	●●●●●●● (5)
정치적 이유 (17)	이념·정치색	●●●●●● (4)
	코드인사·들러막기인사	●●●●●●●●●●●●●●●● (13)

※ 전체 인사청문회 54회 중 다뤄진 주요 쟁점 100건 복수 수집

Chapter 3

개정안

제 3조

연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조항 개정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개정 2003.2.4>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이 구성된 날부터 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9인으로 하며 제 3조 7항에 제시되어있는 국가기관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한다.

조항 신설 수 있다. <개정 2003.2.4>

④ 이 조항의 규범관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⑦ 국가기관은 기관 당 3인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과학기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보하이에서 이경된 때 또는 인사청문결과가 보하이에 보고 될 때까지

⑧ 자문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문성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문단의 인선은 입법부가 선출하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가. 국방자문위원단에는 군사전문가, 외교전문가, 남북통일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나. 경제자문위원단에는 금융전문가, 세법전문가, 행정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다. 복지자문위원단에는 인권전문가, 국민권익전문단, 양성평등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라. 환경자문위원단에는 환경오염전문가, 생화학전문가, 생태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제 6조

- 연 □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부회의에 부의하거나 임명장승급 임명권 부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중급의 고위직으로 한다. <개정 2003.2.4>
-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2.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 완료표결이 가결된 시점에

조항 개정

조항 삭제

제 9조

연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야 한다. <개정 2002.3.7, 2003.2.4>

조항 개정

회부된 날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 완료표결이 가결된 시점까지를 인사청문 활동기간으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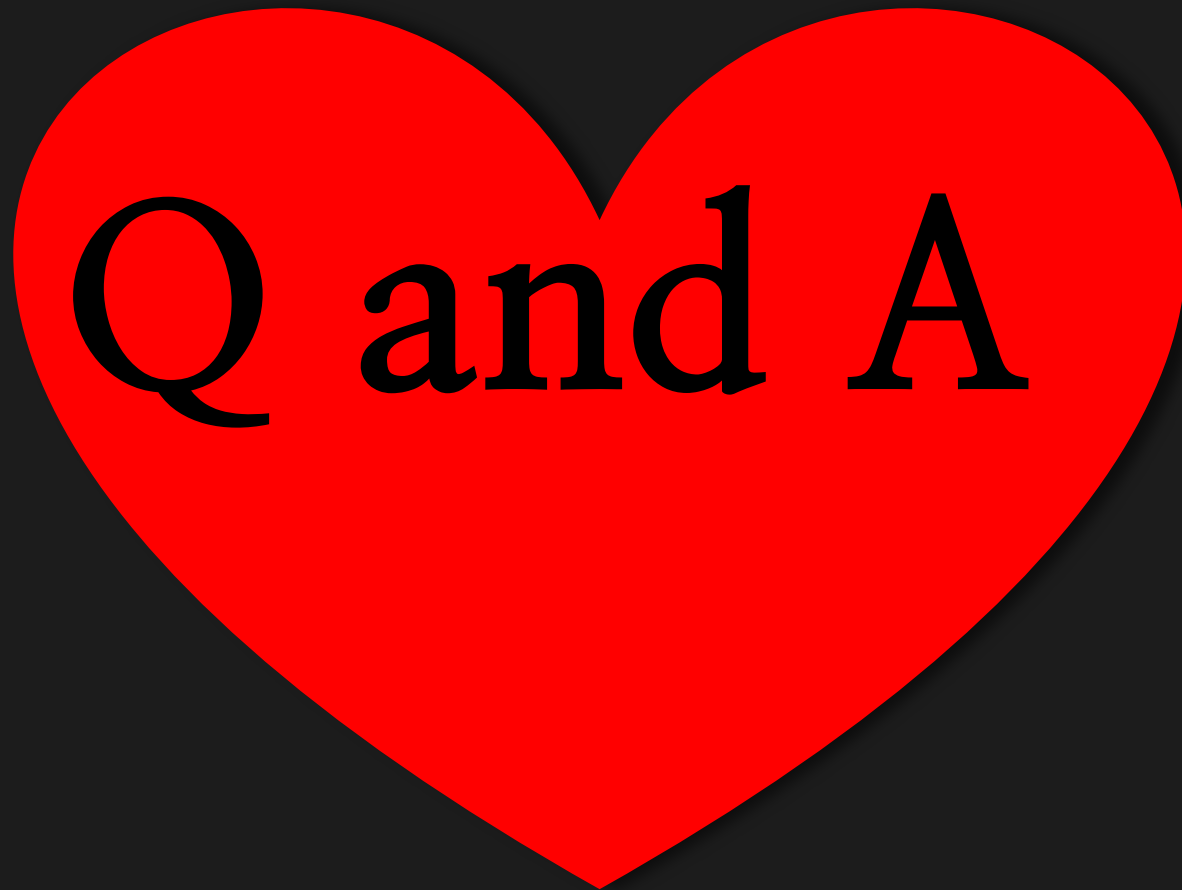
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3.7, 2003.2.4>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조항 삭제

제 10조

- 연**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조항 개정**
- ②의장은 보고서가 **경과보고서는 자문단의 전문성평가기준안 및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 <신설 2003.2.4>
[제목개정 2003.2.4]



Q and A